현 지 조 치 사 항

일련번호	1	부서·기관명	서울시설공단	시행년도 (처분요구일)	2019 (`19. 11.)

제 목 : ○○○○○○○○ 대관 이용료 감면 부적정(주의요구)

1. 내 용

서울시설공단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에 따라 ○○○○○○○ 내 야외무대(열린무대·숲속의 무대) 및 일반광장에 대해 대관 및 이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"조례 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는 아래 〔표 1〕 같이 "○○○○○○ 내 시설의 이용료 및 주요 감면기준 등"을 규정하고 있으며, 야외무대 이용 시 가중·감면 기준을, 일반운동장(광장) "토,일, 공휴일, 야간 등의 사용의 경우" 이용시 이용료 가중 기준을 정하고 있고 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.

【표 1】 ○○○○○○ 이용료 및 주요 감면기준 등

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
야외무대 이용료	2시간	100,000	• **공원이용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** • 야간은 주간의 2배 •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%
일반운동장(광장)	1㎡당	체육경기: 5 기타행사: 10	• 토, 일, 공휴일은 이용 금액의 30% 가산 •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% 가산(토. 일. 공휴일은 제외) •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%

(※ 출처 : 감사 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)

한편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매년 "○○○○○○○○ 행사운영 기본계획"을 수립하여 "공연이용 활성화 등에 도움 되는 문화예술공연"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대관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있다.

그런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」에서 야외무대 이용과 일반운동장 이용 시 이용료의 가중·감면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것과 달리, 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야외무대 이용과 일반운동장 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료 면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.

그 결과 위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야외무대와 달리 일반운동장 사용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없음에도, 2017.9.21. ○○구청에서 ○○가족백일장 행사를 위해 ○○○○○○ 일반운동장(광장)을 대관하였는데 서울시설공단 위 기본계획 대관료 감면기준을 근거로 이용료를 면제하는 등

〔붙임 1〕 "일반운동장 면제내역 현황"과 같이 총 8건(이용료 면제 금액 : 약 220천 원)의 일반운동장 이용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과 달리 이용료를 면제하였다.

2. 조치할 사항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○○○○○○○○○ 대관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대관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, "○○○○○○○○○ 행사운영 기본계획"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대관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○○○○○○○○○ 대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**(주의)**

3. 회보여부 : 회보 필요

〔붙임 1〕 일반운동장(일반광장, 잔디광장) 면제내역 현황

연번	기관명	행사명	사용			대관료			비고 (적정대관료 산출내역)
			일자	시간	면적	기 부과(A)	적정(B)	차액(B-A)	
1	○○구청	○○가족백일장	'17.9.21(토)	10:00~17:00	1,500	0(면제)	87,750	87,750	기본료(2시간): 1500×10×2×1.3 = 39,000 사용료(5시간): 1500×5×5×1.3 = 48,750 총 계 : 39,000+48,750 = 87,750
2	○○구청	○○가족백일장	'18.10.20.(토)	11:00~17:00	1,500	0(면제)	78,000	78,000	기본료(2시간): 1500×10×2×1.3 = 39,000 사용료(4시간): 1500×5×4×1.3 = 39,000 총 계 : 39,000+39,000 = 78,000
3	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	*** *** **	'17.5.3(수)	09:00~17:00	300	0(면제)	7,500	7,500	기본료(2시간): 300×10=3,000 사용료(6시간): 300×2.5×6=4,500 총 계: 3,000+4,500 = 7,500
4			'17.5.5.(금)				7,500	7,500	기본료(2시간): 300×10=3,000 사용료(6시간): 300×2.5×6=4,500 총 계: 3,000+4,500 = 7,500
5			'17.5.6.(토)				9,750	9,750	기본료(2시간): 300×10×1.3=3,900 사용료(6시간): 300×2.5×6×1.3=5,850
6			'17.5.7.(일)				9,750	9,750	기본료(2시간): 300×10×1.3=3,900 사용료(6시간): 300×2.5×6×1.3=5,850
7			'17.5.13.(토)				9,750	9,750	기본료(2시간): 300×10×1.3=3,900 사용료(6시간): 300×2.5×6×1.3=5,850
8			'17.5.14.(일)				9,750	9,750	기본료(2시간): 300×10×1.3=3,900 사용료(6시간): 300×2.5×6×1.3=5,850
계							219,750	219,750	-

(※ 출처 :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)

현 지 조 치 사 항

일련번호	2	부서·기관명	서울시설공단	시행년도 (처분요구일)	2019 (`19. 11.)

제 목 : 미수채권 통합관리 등 개선 필요(주의요구)

1. 내 용

서울시설공단은 지방세외수입 등과 관련한 미수채권의 회수 및 소멸시효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.

서울시설공단의 각 사업에 의해 발생한 지방세외수입 등과 관련한 미수금의 경우, 채권 회수 현황 등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 여부, 채권회수 절차 등 전반적 진행상황에 대해 현업부서 및 ○○처 등 관계 부서가 공유하여 채권 회수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.

그런데 공단은 다음 〔붙임 1〕과 같이 지방세외수입 등과 관련한 각 미수채권에 대해 현업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, 특히 ○○○○○의 변상금 및 ○○○○○ 임대료 등에 대하여는 전산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고 있다.

그 결과 채권의 적기 징수 및 소멸시효의 적정한 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.

2. 조치할 사항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각 사업별 미수채권에 대해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미수채권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**(주의)**

3. 회보여부 : 회보 필요

〔붙임 1〕 공단의 사업장별 미수채권 발생 유형 및 관리 현황

연번	부서명	부서명 (회계기준)	항목	채무자	발생원인	미수금액 ('19.3월기준 누적관리액)	전산(관리)시스템 운영 여부
1	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	임대료	임차인	채무자변제불능 등	413,204,051	O
2		○○○○○	관리비	임차인		153,165,909	O
3	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	○○관리비	봉안 신청자	관리비 미납	860,785,000	O
4		○○○○○	○○재사용료	봉안 신청자	재사용료 미납	21,340,000	O
5		○○○○○	○○관리비	분묘 신청자	관리비 미납	598,268,000	O
6		○○○○○	변상금	시유재산 무단 사용자	변상금 미납	1,269,000	X
7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	임대료	입점업체 1개소	경영악화	587,005,940	O
8		○○○○○○	사용료	㈜○○○○○○○	법인 무재산 및 청산종결로 재산 확보 불가	84,060,470	O
9		○○○○○	임대료 등	임차인	영업부진으로 인한 체납 및 무단점유	189,477,610	X
10	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	임대료	임차인	소송진행중, 무재산	130,910,130	O
11			사용료 (관리비등)	임차인	소송진행중	41,500,330	O
12			변상금	임차인	납세태만	283,420	O
13	○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	임대료	수허가자	채무자변제불능 등	1,125,114,760	O
14	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	위탁료	㈜○○○○○	위탁료 미납	1,301,936,850	O
15			주차료	주차장 이용자	주차료 미납	1,297,523,150	O
16	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○	사용료	수허가자	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	2,312,093,820	O
17			변상금	무단점유자	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	534,585,320	O
18			관리비	수허가자	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	353,415,590	O
19		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	통행차량 차주	통행료 미납	359,730,000	O

※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